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22 선고 2020나5242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22 선고 2020나52427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. 16 선고 2019가단206616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,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

피고,피항소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

담당변호사 이진욱

변론 종결 2020. 8. 27

판결선 고 2020. 10. 22

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가단206616 판결

주 문

LC1. 원고(선 정당사자)의 항소를 기 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,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, 선정자 C에게 각 6, 434, 112원 및 2019. 9. 12. 부터 원고, 선정자 C의 별지 1.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91, 62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선정자 D에게 12, 868, 223원 및 2019. 9. 12. 부터 선정자 D의 별지 1.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까지 매월 183, 24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선정자 E에게5, 662, 018원 및 2019. 9. 12. 부터 선정자 E의 별지 1.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91, 62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선정자 F에게 7, 206, 205원및 2019 . 9. 12. 부터 선정자 F의 별지 1.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91,62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(제 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제출한 갑제 7호증까지 보태어보아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성철판사 강 건판사 박나리

별지